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년 5월 24일

나. 제 출 자 : 구미시장

다. 회부일자 : 2019년 5월 27일

라. 상정일자 : 2019년 6월 13일

제23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 경제기획국장 배 정 미

나. 제안이유

- 구미시는 '15. 4월 산업부의 3D프린팅 대경거점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본 공모사업의 수행기관으로서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 내 「대경거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이에 수행기관의 원활한 거점센터 운영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공유재산 사용료에 대하여 감면 동의를 받고자 함.

다. 주요내용

○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 사용료 감면

- 위 치 :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금오테크노밸리 내
- 사용주체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감면기간 : '19. 7. 1. ~ '20. 6. 30. (12개월)
- 사용면적 : 724.5m²(1층 535.5m², 2층 189m²)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7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 개요

- 위 치 :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금오테크노밸리 내
- 규 모 : 3,882.9m², 지상1층 ~ 4층
- 건 립 비 : 35.7억원(도11, 시 24.7) ※ 준공일 : '16. 2. 29
- 사업내용 : 3D프린팅 센터구축, 연구개발, 기업지원, 인력양성 등
- 운영방법
 - 건물 운영 및 관리: 구미시(신산업정책과) 직접운영
 - 3D프린팅 대경거점센터 운영: 한국생산기술연구원(수행기관)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이 중 우

○ 본 「공유재산(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은

- 사업수행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2016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총사업기간이 3년간이었던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 구축사업을 1년 연장하기 위하여 금오테크노밸리 내 건물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해당 사업을 추진하며 3D프린팅 첨단 장비를 구축하여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신기술을 보급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연간 사용료 3천6백만원을 감면받아 사업기간을 연장할만한 타당한 사유와 효과가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